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원선

문화체육부 저작권과 서기관

이 법률안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투자의 촉진과 지적소유권의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 법 전 제15편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무어헤드(Moorhead) 위원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미국은 같은 날 동 법률안을 정리한 조약안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진행중인 전문가회의에서 공식 발표하여 국내 입법과 국제 조약안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무역관련지적소유권(WTO/TRIPs) 협정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여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그런데 정보시대로 접어들면서 바로 이 데이터 자체의 상품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이의 거래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시장 발전에서 차지하는 주도적인 역할과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배려하여 이에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과실을 요건으로 하

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선의의 개인이 행하는 부정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작성자에게 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추출권 및 재이용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금년 2월에 이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고, 회원국들은 1998년 1월 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금년 2월초의 회의에서 이 지침이 채택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문가회의에 조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미국이 종전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하여 대다수 회원국가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무릅쓰고 조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보호법안 전문에 대한 번역이다.

제1조 촉약 명칭

이 법은 ‘1996 데이터베이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침해방지법’이라 칭한다.

제2조 정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변화’란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질, 양 또는 가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이란 의회에 의해 적법하게 규율 받는 모

든 형태의 상업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란 저작물, 데이터 기타 자료를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어떠한 형태 또는 매체에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집, 결합 또는 편집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집, 결합, 검증, 조직화 그리고/또는 표현하는데 있어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 둘 이상의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인 경우에 그들은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된다.

(2) 데이터베이스가 고용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된다. 그리고

(3) 데이터베이스가 특별한 지시나 의뢰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지시나 의뢰를 한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소유자의 이름 기타 신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추출 및 사용이나 재사용 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승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추출’이란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의 복제물의 내용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전은 현재 알려졌거나 장래에 개발될 어떠한 수단이나 형식으로든지 동일 또는 다른 매체에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 기관’이란 미국 연방 정부나 주 및 이의 대리 또는 대행기관과 공식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하는 직원이나 고용인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 해도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법인’이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회, 주식회사, 조합, 연합체, 비영리기관 기타 조직을 말한다.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 또는 재사용 하거나 이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정부 기관을 통칭한다.

‘사용’과 ‘재사용’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장래에 개발될 어떠한 수단에 의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부 또는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i) 매매, 판매 또는 대여, (ii)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물의 형태로, 또는 (iii) 배포, 온라인 기타 송신의 방법에 의하여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a) 이 법은 그 내용을 수집, 결합, 검증, 조직화 또는 표현하는 데 인력, 기술, 재원 기타 지원을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투자한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다.

(b)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공중에게 공개된 것인지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데이터베이스가 수록된 형식이나 매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내용이 지적 창작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c) 정부 기관에 의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

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었을 데이터베이스는 그 내용이 정부로부터 획득된 것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

(d) 데이터베이스의 제조, 생산, 작동 또는 유지에 사용되는 모든 여하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해 컴퓨터프로그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었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그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타 저작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호된다.

제4조 금지된 행위

(a)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허락없이--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부 또는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 해서는 안되며,

(2) 제5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 누적된 결과로서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 해서는 안된다.

(3) (1) 또는 (2)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알선, 지시 또는 의뢰해서는 안된다.

(b)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그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베이스와 시장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또는
- (2)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허락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 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이익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 (3)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고객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 (4) (이용허락, 구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허락을 받아 추가적으로 사용 또는 재사용 하는 것을 대체하여 조직이나 법인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또는 그들을 위해 사용 또는 재사용 되는 경우

제5조 금지된 행위의 예외

(a) 제4조(a)(2)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적인 사용자는 공표되었거나 상업화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에서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자유로이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b)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출처로부터 저작물, 데이터 또는 자료를 수집, 결합 또는 편집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보호 기간

(a) 데이터베이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되기에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최초로 공표된 날 또는 최초로 상업

화된 날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b) 조직 및 표현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추가, 삭제, 재검증, 변경, 수정이나 기타 수정의 집적을 통한 변화를 포함해서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그 결과적인 데이터베이스는 (a)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별도의 보호 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7조 제4조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a) 민사소송 제4조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문제가 된 액수에 관계없이 적절한 미국의 지역 법원에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법원에서 도 제기될 수 있다.

(b) 일시적 및 확정적 금지명령 이 법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제4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일시적 및 확정적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청문과 당사자에 대한 필요적인 통지 후에 미국 내에 있는 지역 법원에 의한 이러한 금지명령은 그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는 미국 내 어디에서나 그러한 금지명령이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에게 행사될 수 있으며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의 지역 법원에 의하여 법정모욕의 부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c) 압수 이 법에 의한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제4조를 침해하여 추출되어 사용 또는 재사용 되거나 사용 또는 재사용된 데이터베이

스의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의 제작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크 또는 기타 물건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4조의 침해를 판시하는 최종 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제4조를 침해하여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의 제작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크 또는 기타 물건의 변경이나 파괴를 명할 수 있다.

(d) 재정적 구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제4조의 침해가 입증된 경우에 원고는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i) 피고의 이익, (ii)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그리고 (iii) 소송비용을 회복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이러한 이익이나 손해를 직접 평가하거나, 그의 시시하에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판매액만을 입증하면 된다. 피고는 제기된 비용과 공제액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기초하여 그 액의 세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판명된 액수 이상의 액을 판정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이익액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액을 판정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e) (b)와 (c)의 규정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본 조에 의한 구제는 적용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정부 기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제8조 형사범죄와 제4조의 침해에 대한 벌칙

(a) 제4조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사람과 (1)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상업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하거나, 또는 (2) 그렇게 함으로써 1년 이내에 총 10,000 달러 이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입게 한 사람은 (b)에 규정한 벌에 처한다.

(b) (a)에 규정된 범죄에는 25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a)에 규정된 범죄를 두 번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범한 때에는 50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과의 관계

(a) 이 법에 따른 침해에 대한 구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또는 그러한 내용의 선택, 조정 또는 배열에 대한 저작권에 기초한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제는 이러한 저작권에 기초한 보호의 존재, 범위 또는 기간을 제한 또는 저해하거나 기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데이터베이스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이용허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이 법의 어떤 조항도 특허, 상표, 디자인, 반독점 또는 경쟁, 영업비밀, 데이터 보호와 해적행위, 공적인 문서에의 접근, 그리고 계약법 등 데이터베이스와 그의 내용에 있어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다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데이터베이스 보호장치의 우회

누구라도 이 법 제4조를 침해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추출, 사용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절차, 처리, 기계장치, 또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허락이나 법에 의한 권한없이 무효화, 우회, 제거, 해제 또는 기타 회피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장

치나 제품 또는 그러한 장치나 제품의 부품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여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11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의 동일성 유지

(a) 허위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 누구라도 고의로 허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중에게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안된다.

(b)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누구라도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허락이나 법에 의한 권한없이 (i)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 (ii)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허락이나 법에 의한 권한없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를 고의로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iii)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허락이나 법에 의한 권한없이 제거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고의로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a) 민사소송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침해로 침해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된 액수에 관계없이 적절한 미국의 지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 정부 기관에 대한 소송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소송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법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b) 법원의 권한 (a)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일시적 및 확정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 기초

하여 침해자로 주장되는 자의 관리나 통제 하에 있는, 침해에 관련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모든 장치나 제품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 (3) (c)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4) 법원의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에 의하거나 그를 상대로 한 비용의 회복을 허락할 수 있다.
- (5) 법원의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 (6) 최종 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침해자의 관리나 통제하에 있는, 침해에 관련되었거나 (ii) 호에 의해 압수 중인 모든 장치나 제품의 구체적인 변경이나 파괴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d) 손해배상- (1) 총칙-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자는 (A) 실제 손해액과 (2)에 규정된 바와 같은 침해자의 추가적인 이익액, 또는 (B) (3)에 규정된 바와 같은 법정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실제 손해액- 법원은 원고에게 침해로 인해 그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침해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손해액에는 산입되지 않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원고가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그러한 손해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상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정 손해액 (a) 원고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제10조의 각각의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대로 장치, 제품, 서비스의 제공이나 실행의 각 건당 총 200 달러 이상 2,5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선택할 수 있다. (b.) 원고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제11조의 각각의 침해에 대하여 200 달러 이상 2,5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선택할 수 있다. (4) 반복적인 침해- 피해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이러한 침해를 하였다는 최종 판결이 있는 지 3년 이내에

그가 제10조 및 제11조를 침해하였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배상되었을 액수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선의의 침해- 법원은 침해자가 그의 행위가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전체 배상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면제할 수 있다. (d) (b)(1) 및 (2)의 규정은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 (b)에 규정된 구제는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 정부 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침해와 벌칙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제11조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500,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 소송의 제한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제15조 시행일

- (a)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하며,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
- (b) 누구라도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자신 또는 그의 이해관계 있는 승계자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합법적으로 추출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사용 또는 재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DCL**